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88

발의연월일: 2025. 1. 7.

발 의 자:조계원·김문수·주철현

김우영 · 양문석 · 양부남

민병덕 • 이기헌 • 임오경

박지원 • 윤준병 • 이개호

소병훈 · 신정훈 · 민형배

이강일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의 안전을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아직까지 안전관리조직의 구체적인 직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,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공연 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, 사고조사의 대응 등 안전총 괄책임자의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).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 총괄책임자에게 해당 공연장 및 공연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1.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
- 3.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조사의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4.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점검 및 개선
- 5. 안전관리담당자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공연자, 관람자 등을 위한 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3(안전관리조직) ① (건략) <u><신 설></u>	제11조의3(안전관리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해당공연장 및 공연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제11조의5에 따른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3. 제11조의5에 따른 시고조사의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.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위한 환경 점검 및 개선 5. 안전관리담당자의 관리・감독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공연자,관람자 등을 위한 재해예방조치에 관한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<u>②</u> (생 략)

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